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069호
- 나. 제 안 자 : 이병도 의원 (찬성자 12명)
- 다. 제 안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운영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함

3. 주요내용

-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운영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3호)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함(안 제12조제1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¹⁾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며, 관련법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2023.12.31.)로 끝남에 따라 그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설></u></p> <p>3. (생략)</p> <p>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 ⑩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한 차례만 ----- ----- -----</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법제처(2021.12)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p>	<p>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p>

나. 검토 내용

“균형발전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8조제3호)”

- 현행 조례 제8조는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재정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및 교통·복지·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호는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한 조항을 비교하면, 경기도는 조례 제11조제2항 제4호에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가 사업비를 심의·의결·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는 조례 제 22조제4호에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가 특별회계의 운영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 현행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 종합적인 틀에서 균형발전 사업이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할 필요성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원회의 설치·기능 조항 비교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을 제시하거나 도시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p>제21조(설치) 시장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정·변경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방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u>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u>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안 제9조제4항)”

-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 제9조제4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됨

“관련 법령 조문 변경(안 제12조제1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2023.7.10. 시행)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7.10.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특별회계 세입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3.6.9. 타법폐지, 2023.7.10.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7.10. 시행) >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중간생략)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안 제13조)”

- 서울시는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19.1월에 특별회계의 설치조항(현행조례 제11조)을 신설하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현행조례 제12조),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지역균형발전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9.1월 조례 개정 제안이유2)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9조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의 소관사무로 분장4)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경우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점검과 위원회 구성·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와 특별회계 예산운용 부서 간 긴밀한 협의 하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영)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의안번호 202)'
제안이유 :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함

3)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⑩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존속기한을 2년만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당연 지속을 지양하고 계속 운용이 필요한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회계 운용 현황을 점검케 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존속 여부와 더불어 필요 시 개선방안도 강구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2022년 10월 균형발전본부에서 수립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으로 5개 분야의 88개 과제 수립을 통해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되었으나,
-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총 58개 사업 중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2개(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22.5%, 붙임1 참조)에 불과하며 현행 조례 제10조5)에 규정된 전담조직이라 볼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1개에 불과함
- 아울러, 지역 간 재정여건, 경제·산업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의 고질적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붙임2 참조)의 대부분은 생활SOC 확충과 국비 매칭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당초 특별회계가 의도한 바에 따라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소규모 생활서비스 시설확충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균형발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에 따른 특별회계 운용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 있음
-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23.5.26.)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2028년 12월 31일)을 원안가결하고, 입법예고(‘23.6.15~7.5.)

5)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전담조직)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를 실시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바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과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전체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으로 실질적인 균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됨
-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이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특별회계의 목적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 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균형감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단위 : 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명		'23년 예산액 (169,685)
합 계		38,147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9,803
2	서서울미술관건립	10,952
3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98
4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지원	223
5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	291
6	중랑구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지원	1,178
7	강동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0
8	서대문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지원	300
9	강북구 제4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387
10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716
11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
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900

출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2 2023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현황자료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417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716
4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	291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0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대문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지원	300
7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종량구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지원	1,178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지원	223
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지원	2,548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북구 제4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387
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1,187
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19,803
1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3,881
1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900
1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4,395
1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203
1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5,082
1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420
19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1,330
2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4,536
2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26,900
2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866
2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전환사업)	104
2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전환사업)	300
25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강서구문화체육전기복합에너지충전타운도서관건립 지원(전환사업)	2,500
26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1,126
27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브라이트여의도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3,897
28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전환사업)	1,000
29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532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3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158
31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98
3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상일동도서관생활soc복합화 사업지원(전환사업)	2,572
3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성북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1,771
3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응암정보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전환사업)	1,281
35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원(전환사업)	1,420
36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건립	17,013 (10,952)
37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8,582
38	문화본부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60
3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응암정보도서관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180
4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대문구북가좌2동복합청사건립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대문구신촌동주민센터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금천구가족센터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119
4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구로구 고척1동청사 생활SOC복합화(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410
4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초구구룡공영주차장생활SOC복합화(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신길12구역사회복지복합시설건립(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270
4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장원중 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4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20,817
48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관악문화복지타운건립(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300
4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광진 문화예술 리모델링 지원(전환사업)	3,000
5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속)	500
5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장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500
5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도봉 문화예술 건립 지원(전환사업)	598
5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1,426
5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656
5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4,524
5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900
5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중랑구혜원여고주차장및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300
58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지방채증권이자상환	68

출처: 서울재정포털 사업별 예산정보(2023)

붙임3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문서번호

2023081100000046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호 중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영 사항을 추가하고,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제1항 중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하며,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